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'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)

-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9. 8. ~ 9. 28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중 “2022년”을 “2027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2027년</u>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-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임

### 4. 작성자

체육정책과, 신호경, 02-2133-2679